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1,897,296	10,556,919
일반회계	290,298,816	8,708,964
특별회계	61,598,480	1,847,954
공기업특별회계	48,164,722	1,444,9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955,390	928,6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209,332	516,280
기타특별회계	13,433,758	403,013
주택사업특별회계	32,077	9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26,964	42,809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77,626	2,32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88,000	26,640
공업단지특별회계	4,345	13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0,600	9,9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1,829	2,155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067	32
기반시설특별회계	41,650	1,2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59,600	316,788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66,15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